

개정 전문

소수집단학생지원 규정

소관부서: 교무연구지원처, 학생실천지원처,
장애학생지원센터

(제정일: 2019.10.10.)

(제1차 개정, 2020.7.15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소수집단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.(개정 2020.7.15.)

- ① 장애학생
- ② 외국인 유학생
- ③ 다문화가족의 학생
- ④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학생

제2장 지원사항

제3조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에 대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① 학습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대학생활 및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③ 도우미(멘토) 지원 사항
- ④ 기타 소수집단학생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

제4조(지원체계) ① 제2조제1항의 해당자에 대한 지원은 학생실천지원처,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0.7.15.)

- ② 제2조제1항 이외의 소수집단학생에 대한 지원은 교무연구지원처, 학생실천지원처에서 담당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20.7.15.)
- ③ 담당부서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하고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.

제3장 보칙

제5조(보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(시행일) ①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(교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제2조의 “침례신학대학교”를 한국침례신학대학교“로 개정하는 사항은 부칙 제1조의 ②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